

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만 할 것으로 사료됨. 또한 서울시는 소송당사자이며, 그리고 행정처분기관임. 따라서 동 청원건에 대한 의견, 즉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 및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만 할 것임. 이상과 같이 여러 기관 및 시민단체등과의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청원건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생략
- 7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- 8. 심사결과 : 본회의 부의하기로 가결.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의 건 서

- 청원명 : 난지환경대중골프장 협약해지와 시민가족공원 추진에 관한 청원
- 처리하여야 할 기관 : 서울특별시장
- 채택의견 :
 -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여부를 의회에 보고할 것.

청원요지서

접수번호	77		접수년월일	2004. 7. 26
청원인	주소	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75-591		
	성명	여진구의 19인	주민등록번호	
소개의원	정홍식 의원 (열린우리당, 관악구 제3선거구, 환경수자원위원회)			
건명	난지 환경대중골프장 협약 해지와 시민가족공원 추진에 관한 청원			
소관위원회	환경수자원위원회			

요지

- 서울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지로 이용되어 온 난지도 일대 105만평을 새롭게 조성하여 환경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월드컵공원내 노을공원에 대해 지난 200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거쳐 공원과 골프장 조성 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공원과 골프장 이용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성과 생태친화적인 골프장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음.
- 협약대상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현재 공사가 완료 준공된 시민공원 및 환경대중골프장 개장을 고의로 연기하는 등 시민이용공간의 미개방과 협약의 목적인 공익성확보와 생태친화적 여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협약불이행으로 시민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
- 이에 청원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결한 “난지도 노을공원 조성 운영에 관한 협약” 해지와 시민가족공원으로 추진 및 변상금 부과, 고발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.